

공직자 윤리 서약서

(제74조제3항 및 제84조 제4항 관련)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근무(고용)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 근무함에 있어 공직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민간기업(고용기관)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 및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기타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채용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3.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민간근무(고용)휴직 중 또는 복귀 후에 당해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 대하여 편중된 업무처리,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을 하거나 이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5. 복직 후에는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민간근무(고용)휴직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 규정 위반 시에는 조기복귀 등 상응하는 처분에 대하여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기관장) 귀하